

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-287호

공 고

2023.3.1.자 중등 공모교사 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1월 8일

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



1. 관련

- 교육공무원법 제31조(초빙교원)제2항
-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7(초빙교사의 임용 요청 등)

2. 공모교사 초빙 기간

- 2023. 3. 1. ~ 2029. 2. 28.(6년)

3. 학교별 응모 영역 및 응모 요건

가. 공모교사제

공모 학교	공모 교과	공모 인원	공모교사 응모요건
옥구중	국어	1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혁신학교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사</li> <li>○ 학생들과 공감하며 수업 혁신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에 동참하고 수업 혁신을 위해 노력하며 교사의 전문성을 위해 정진하는 교사</li> </ul>
	기술·가정	1명	
	음악	1명	
회현중	과학	1명	○ 과학과 교육과정 및 수업과 평가의 혁신에 실천의지를 지닌 교사
	도덕	1명	○ 교육과정 재구성의 내용교과로 수업과 평가를 운영하려는 의지를 지닌 교사

#### 4. 임용 요건

##### 가. 초빙(공모)교사 공통 적용 사항

- 1) 우리교육청 소속 공립 각급학교,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현직 정규 교사(비교과 교사 제외)를 대상으로 한다.
- 2) 신청서류 제출일 현재, 도서·벽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, 국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는 제외한다.
- 3) 현임교, 현임지역 만기자는 각각 현임교, 현임지역 초빙(공모)교사에 지원할 수 없다. 단, 대안교육 특성화 중·고등학교는 지원이 가능하며 공모학교 근무 시작을 지역 근무 연한의 시점으로 한다.

##### 나. 초빙교사 대상자

- 1) 초·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로 당해 학교 교사 초빙 요구 조건에 적합한 자로서 정기전보 대상자 중 순환전보 대상자(현임교, 현임지역), 폐교 및 학급감축, 정원감축으로 인한 전보대상자로 한다.
- 2) 구체적인 초빙교사 요건은 당해 학교의 장이 교직원과 학부모 의견, 교육과정, 기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##### 다. 공모교사 대상자

- 1) 혁신학교: 현임교에 3년 이상 근무한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.
- 2) 혁신+학교,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 중·고등학교: 현임교에 2년 이상 근무한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.
- 3) 구체적인 공모교사 요건은 당해 학교의 장이 교직원과 학부모 의견, 교육과정, 기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#### 5. 초빙(공모)교사의 인사

가. 초빙(공모)교사제 실시는 매년 정기전보 시 실시한다.

나. 초빙교사는 현임교에서 순환전보(감축 포함) 대상이 되어 교사 초빙에 신청할 때, 현임교가 1, 2급지인 경우 3, 4, 5급지 학교에만 신청할 수 있다.

다. 초빙(공모)교사는 초빙(공모) 근무기간 만료 이전에 원칙적으로 다른 학교에 전보할 수 없다. 다만, 초빙(공모)교사가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로 전출을 희망할 경우 동일교에서 3년 이상 근속자를 순환전보대상자로 간주하여 전보하며,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빙교사 임용권자(교육감)에게 전보 승인 요청(사유서, 학교장 확인서, 증빙자료 첨부)

## 〈근거자료〉 교육공무원 인사실무(교육부 교원정책과, 2016)

### II. 교사초빙제 4. 초빙교사의 인사

- 라. 초빙교사는 초빙 근무기간 만료 이전에 원칙적으로 다른 학교로 전보할 수 없음. 다만, 초빙교사가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빙교사 임용권자에게 전보 요청을 하거나, 초빙교사 임용권자(교육감) 직권으로 전보를 시킬 수 있음
- 사. 초빙교사 임용권자(교육감)는 학교의 귀책 사유로 초빙이 해지되는 경우 해당 학교를 일정기간 초빙 대상 학교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, 초빙교사의 귀책 사유로 초빙이 해지되는 경우 해당 교사에 대해 향후 초빙 교사 임용을 제한할 수 있음

라. 시·도간 교류는 동일교 2년 이상 근속자도 지원 가능.

마.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 중·고등학교에서 순환전보 대상자와 초빙기간이 만료된 자는 1회에 한하여 연속하여 재초빙(공모) 할 수 있다.

※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 중·고등학교 이외의 동일교 재초빙은 연속하지 않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가능

바. 초빙(공모)교사의 근무 기간은 지역 근무 연한에 포함한다.

사. 절차상 하자 및 심사의 공정성에 하자가 있을 경우 임용권자는 초빙(공모)교사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.

아. 초빙(공모)교사 희망자는 1개교에만 ‘초빙(공모)교사 지원서’를 제출할 수 있다.  
(1인이 2개교 이상 중복 지원 시 초빙 임용을 취소함)

자. 공모교사제를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공모인원이 초빙교사의 인원보다 적을 경우 잔여인원에 한하여 별도로 초빙교사제를 실시 할 수 있다.

차. 중학교의 경우 ‘전출 동의 요구’ 및 ‘전출 동의 회신’ 공문을 해당 지역 교육 지원청을 통하여 시행한다.(8쪽의 ‘동의 요청 및 회신 절차’ 참고)

카. 초빙(공모)교사로 전입한 후 현임교 근무기간 중에는 파견, 전직, 기타 선발 전형 응시 등이 제한되며, 휴직 기간은 초빙(공모)교사의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.

## 6. 초빙(공모)교사의 응시제한 기준

가. 징계 처분을 받고 말소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

나. 금품수수,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,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, 성폭력 등으로 경고를 받은 자

다.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,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,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

라. 초빙(공모), 학교장 전입요청 교사로서 기간(6년) 만료 전 전보를 희망한 경우

## 7. 임용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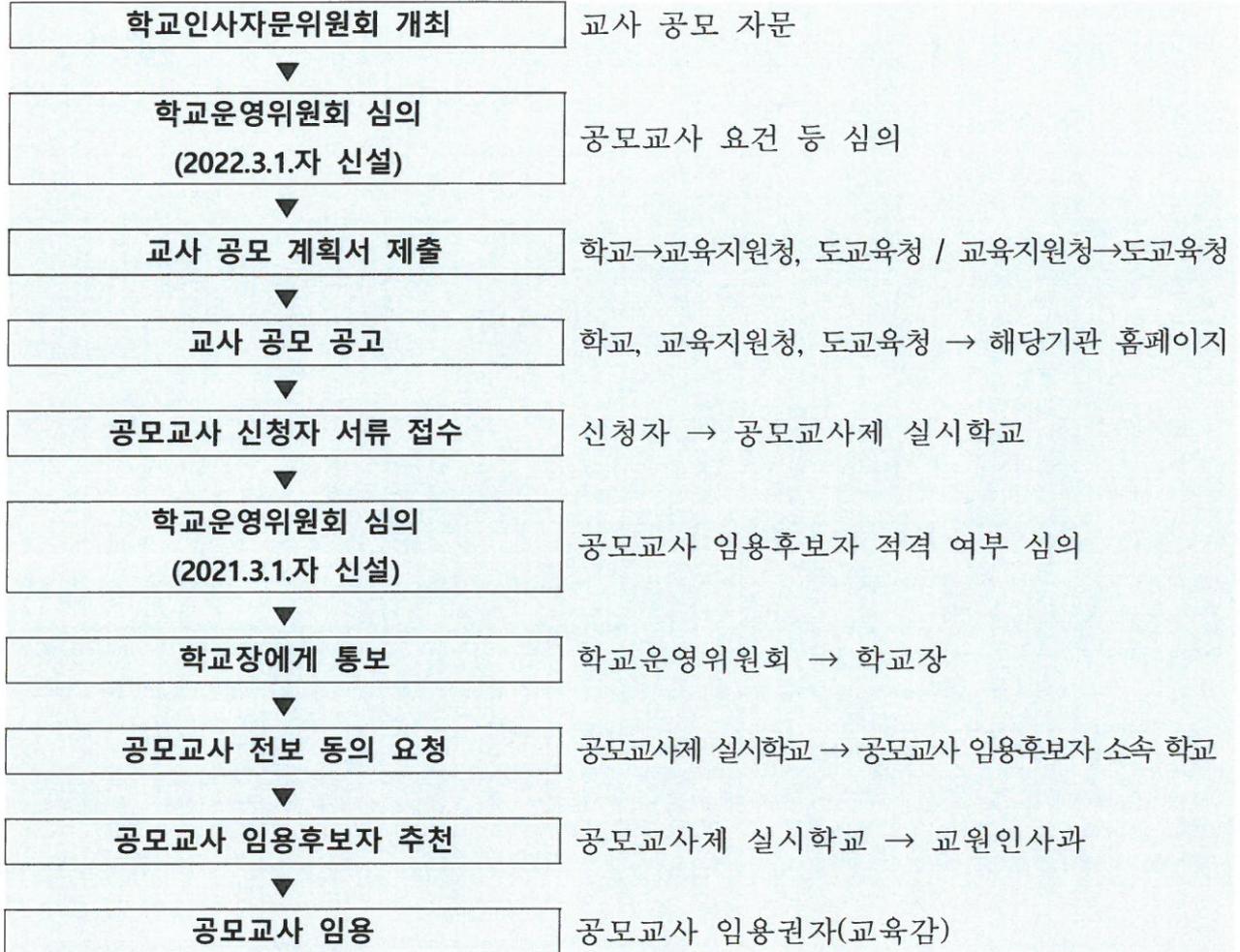
### 가. 초빙교사제

학교인사자문위원회 개최	교사 초빙 자문
▼	
학교운영위원회 심의	초빙교사 요건 등 심의
▼	
교사 초빙 계획서 제출	학교→교육지원청, 도교육청 / 교육지원청 → 도교육청
▼	
교사 초빙 공고	학교, 교육지원청, 도교육청 → 해당기관 홈페이지
▼	
초빙교사 신청자 서류 접수 및 송부	신청자 →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→ 초빙교사제 실시학교
▼	
학교운영위원회 심의	초빙교사 신청자 심사
▼	
학교장에게 통보	학교운영위원회 → 학교장
▼	
초빙교사 임용후보자 추천	초빙교사제 실시학교 학교장 → 교원인사과
▼	
초빙교사 임용	초빙교사 임용권자(교육감)

- 1) 학교장은 교사 초빙 여부 및 초빙 요건을 교직원 및 학부모 의견, 교육과정, 기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사 초빙 여부를 결정한다.
- 2) 학교장은 초빙교사 공고 시 초빙 목적, 초빙 기간, 초빙 과목, 소지자격증 구분, 초빙 인원, 연령 등 초빙 요건을 학교, 교육지원청, 도교육청 통해 공고한다.
  - \* 초빙(공모)교사 계획서를 **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일괄** 공고하고, 업무관리 시스템으로 공고 안내를 하고 있으니 학교는 초빙계획서를 **학교홈페이지에** 공고하고 단위학교로 공문발송은 자제하기 바람.
- 3) 초빙 공고는 1회로 하되, 그 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(1차 공고 시 신청자가 없을 경우 초빙교사제를 취소한다.).
- 4) 초빙교사를 희망하는 교사는 중학교는 교육지원청,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 관련서류(관련 증빙자료 포함) 등을 갖추어 지원한다.

- 5) 학교운영위원회는 초빙교사 임용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의하여 당해 학교장에게 통보하고, 학교장은 적격자를 선정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한다.
- 6) 학교장이 추천한 초빙교사 임용후보자라 하더라도 학급감축 등 교원 수급상 불가피한 경우 초빙교사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.

#### 나. 교사 공모제



- 1) 학교는 혁신학교에 같이 근무할 교사의 교육철학과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모교사제 실시안을 마련하고 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.
- 2) 공모교사제 공고 시 응시자가 없을 때에는 교사초빙제로 대신 할 수 있다.
- 3) 학교운영위원회는 공모교사 임용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학교장에게 통보하고, 학교장은 적격자를 임용권자에게 추천한다.
- 4) 학교장이 추천한 공모교사 임용후보자라 하더라도 학급감축 등 교원 수급상 불가피한 경우 공모교사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.

## 8. 공모교사 응모자 제출서류

### 가. 옥구중학교 공모교사 응모 관련 안내

#### 1) 응모 시 제출서류

- 공모 교사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(서식1).
- NEIS 인사기록 출력물(학교장원본대조필) 1부.
- 공모 교사 관련 증빙 서류 1부.
- 기타 (추후 교사 공모심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)

#### 2) 접수기간 및 장소

- 기간 : 2022.11.8.(화) ~ 2022.11.15.(화)
- 장소 : 옥구중학교 행정실
- ※ 서식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회현중학교 공모교사 응모 관련 안내

#### 1) 응모 시 제출서류

- 공모교사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.
- NEIS 인사기록 출력물(원본대조필) 1부.
- 공모교사 관련 증빙 서류
- 기타 (학교운영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)
- 공모 요구 조건에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증빙 서류 1부 등

#### 2) 접수기간 및 장소, 이후 일정

- 기간 : 2022. 11. 14.(월) ~ 11. 17.(목)
- 장소 : 회현중학교 본교무실
- 심의 : 2022. 11. 30.(수) 10:30 이후 선정여부를 개별 연락
- ※ 공모에 응시한 자가 모집 정원과 같아도 본교의 철학과 지향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.
- ※ 서식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